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4-42호

제337회 동작구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
동작구의회 정유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37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
1. 집회일시 : 2024년 10월 7일(월) 10 : 00
2. 장 소 : 동작구의회 본회의장

2024년 10월 2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정 재 천

